공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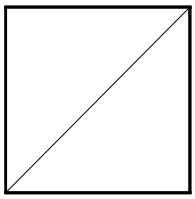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236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12. 14. (제 22 차)

의결사항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2. 12. 14.

1. 의결주문

㈜네이처리퍼블릭의 제6기(2014.1.1.~2014.12.31.)부터 제10기 3분기(2018.1.1.~2018.9.30.)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별지1, 별지2 및 별지3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네이처리퍼블릭의 제6기(2014.1.1.~2014.12.31.)부터 제10기 3분기(2018.1.1.~2018.9.30.)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한 조치안

지적사항	○ **매출 및 판매관리비 과소계상 등** ('15년 8,552백만원, '16년 10,164백만원, '17년 12,669백만원, '18년 1분기 8,999백만원, '18년 반기 9,864백만원, '18년 3분기 12,014백만원)
조치내용 *1,*2,*3,*4	○ 과징금(회사 : 90백만원)*5 ○ 감사인지정 1년*6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보다 낮으므로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

가. 매출 및 판매관리비 과소계상 등 : 중과실

-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2.가.2)]

*3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 2단계 감경

○ 가중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감경사유 : 2단계 감경

- 회사는 심사·감리착수를 회사에 통보한 날(심사 '20.5.28., 감리 '21.7.2.) 이전에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수정·공시('19.4.8.)하였으므로 2단계 감경 [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Ⅵ.3.가.1)]

*4 조치근거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舊 외부감사법')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2항,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舊 외감규정')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제1항

*5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 90백만원

○ 조치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3항 제1호 및 제430조(과징금의 부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6 조치근거 : 舊「외부감사법」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항 제3호, 舊「외감규정」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제1항

나.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지적사항	○ **매출 및 판매관리비 과소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5년 8,552백만원)
조치내용 *1,*2,*3	○ **△△회계법인**(과실 Ⅳ단계*4) - 주의 ○ **공인회계사 ☆☆☆**(과실 Ⅳ단계*4)['15년 주책임자] - 주의 ○ **공인회계사 ★★★**(과실 Ⅳ→Ⅴ단계*4,*5)['15년 보조책임자] - 주의

*1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이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보다 낮으므로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

가. 매출 및 판매관리비 과소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과실

-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면서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실"로 판단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Ⅲ.2]

*3 조치근거

○ △△회계법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3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3항

○ 공인회계사 :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4항,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4항

*4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감경사유 : 해당사항 없음

*5 보조책임자로 1단계 감경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Ⅶ.2]

다.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지적사항	○ **매출 및 판매관리비 과소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6년 10,164백만원, '17년 12,669백만원)
조치내용 *1,*2,*3	○ **▲▲회계법인**(중과실 Ⅲ→Ⅴ단계[*4])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제외점수 20점 ○ **공인회계사 ◇◇◇**(중과실 Ⅲ→감경시 최소[*4,*5])['16년~'17년 주책임자]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 **공인회계사 ◆◆◆**(중과실 Ⅲ→감경시 최소[*4,*6])['16년 보조책임자]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 **공인회계사 □□□**(중과실 Ⅲ→감경시 최소[*4,*6])['17년 보조책임자]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보다 낮으므로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

가. 매출 및 판매관리비 과소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중과실

- '중요한 계정과목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Ⅲ.2.나.2),3)]

*3 조치근거

○ ▲▲회계법인 : 舊「외부감사법」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舊「외감규정」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제1항

○ 공인회계사 : 舊「외부감사법」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舊「외감규정」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제1항

*4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 2단계 감경

○ 가중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감경사유 : 2단계 감경

- ▲▲회계법인은 회사가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심사·감리착수를 회사에 통보한 날(심사 '20.5.28., 감리 '21.7.2.) 이전에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수정·공시('19.4.8.)하도록 조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2단계 감경[舊 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 Ⅵ.3.나.3)]

*5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 1단계 감경

○ 가중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감경사유 : 1단계 감경

-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19.10.31.)에 감독원장으로부터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음 [舊 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 Ⅵ.3.나.2)]

*6 보조책임자로 1단계 감경 [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Ⅶ.2]

4. 참고사항

가. 제15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2.10.27.)

나. 관계법규 (붙임1)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지1)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네이처리퍼블릭

○ 대표이사 : OOO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OO OOO OOOO OOO (OOO, OOOOOOO)

2. 조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에 의하여

○ ㈜네이처리퍼블릭에 과징금 90,000,000원을 부과한다.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하여

○ ㈜네이처리퍼블릭은 2023회계연도(2023.1.1.~2023.12.31.)의 재무제표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네이처리퍼블릭은 제7기(2015.1.1.～2015.12.31.)부터 제10기 3분기(2018.1.1.～2018.9.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매출 및 판매관리비 과소계상 등
('15년 8,552백만원, '16년 10,164백만원, '17년 12,669백만원, '18년 1분기 8,999백만원, '18년 반기 9,864백만원, '18년 3분기 12,014백만원)

- 위탁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 및 동 매장의 운영비용(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어,

- 위탁가맹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에 매출(소비자가격)과 동 매장의 운영비용(판매관리비)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소비자가격의 50%)을 인식하고 동 매장의 운영비용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매출과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하였음

나. 근거법규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5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① 1년 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② 임원의 해임권고, ③ 3년 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④ 경고 또는 주의, ⑤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 제3항, 제430조

○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

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 (2)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음 등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하여야 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문단 2.7

○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별지2)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회계법인

○ 대표이사 : OOO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OO OOO OOOO OOO (OOO,OOOOOOOO) OOO

□ ☆☆☆ [제7기('15년) 주책임자]

○ 생년월일 : 'OO.O.O.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OOOO
○ 주소 : O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 OOOO OOOOO

□ ★★★ [제7기('15년) 보조책임자]

○ 생년월일 : 'OO.O.O.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OOOOO
○ 주소 : OOOOO OOO 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

2. 조치내용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부칙 제2조에 의하여

○ △△회계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4조,「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 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제4항, 제27조, 부칙 제2조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법인은 ㈜네이처리퍼블릭의 제7기(2015.1.1.~2015.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舊「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음

○ 매출 및 판매관리비 과소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5년 8,552백만원)

- ㈜네이처리퍼블릭이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동 매장의 운영비용을 판매관리비로 인식하지 않아 매출과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하였음에도

- 위탁가맹점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회사의 위탁가맹점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舊「회계감사기준」200, 500

○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3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4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의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경고 또는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경고 또는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처분건의하거나,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경고, 주의,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처분건의하거나,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경고, 주의,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감경을 별표 7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별표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별지3)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회계법인

- ○ 대표이사 : OOO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 본점 소재지 : 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

□ ◇◇◇ [제8기('16년) ~ 제9기('17년) 주책임자]

- ○ 생년월일 : 'OO.O.O.
-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OOOO
- ○ 주소 :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OO) OOOO OOOO

□ ◆◆◆ [제8기('16년) 보조책임자]

- ○ 생년월일 : 'OO.O.O.
-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OOOOO
- ○ 주소 : OOOOO OOOO OOOOOO(OOOOOO, OOO OOOOOOOO) OOOO

□ □□□ [제9기('17년) 보조책임자]

- ○ 생년월일 : 'OO.O.O.
-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OOOOO
- ○ 주소 :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

2. 조치내용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3조에 의하여

○ ▲▲회계법인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17회계연도 감사보수액의 10%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고,

- ㈜네이처리퍼블릭의 2023회계연도(2023.1.1.～2023.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정제외점수 20점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4조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며,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며,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며,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법인은 ㈜네이처리퍼블릭의 제8기(2016.1.1.～2016.12.31.)부터 제9기(2017.1.1.～2017.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舊「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음

○ 매출 및 판매관리비 과소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6년 10,164백만원, '17년 12,669백만원)

- ㈜네이처리퍼블릭이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동 매장의 운영비용을 판매관리비로 인식하지 않아 매출과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하였음에도

- 위탁가맹점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회사의 위탁가맹점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舊「회계감사기준」 200, 500

○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3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4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붙임1)

관 계 법 규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1.~2. <생 략>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제외한다.

4.~9. <생 략>

②~④ <생 략>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② <생 략>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⑥ <생 략>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제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조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 4.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 5. <생 략>

제18조의2(자료제출의 협조 요청)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 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 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⑦ <생 략>

[별표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제29조제3항 관련)
1.~6. <생 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20. <생 략>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 7. <생 략>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행한다.

③ <생 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5. <생 략>

③ ~ ⑧ <생 략>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및 결합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생 략>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 4. <생 략>

② <생 략>

③ 증선위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조사) ① 증선위는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질문서·문답서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3.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협조요청

②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삭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③ 삭제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책임자에게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당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다음 각 호의 자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생 략>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삭제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 등)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⑥ 삭제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 략>
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나. ~ 다. <생 략>
3. ~ 8. <생 략>

② ~ ⑧ <생 략>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생 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을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 주권상장법인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⑧ <생 략>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생 략>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에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 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14. <생 략>

부칙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 및 임직원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3. 조치등의 가중·감경

가. 가중사유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

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에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조치등의 병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집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019-13호, 2019.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①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제1호)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제40조(사전통지)①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⑦ <생 략>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생 략>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9. <생 략>
④ ~ ⑥ <생 략>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 다. <생 략>
3. <생 략>
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생 략>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 별표 제3호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제16장 수익

재화의 판매

16.10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⑵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재무회계개념체계

신뢰성

48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실질은 법적 형식 또는 외관상의 형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리스의 법적 형식은 임차계약이지만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향유하고 당해 리스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대가로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 상당액 및 관련 금융비용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리스는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리스이용자는 리스거래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재무제표의 작성책임과 공정한 표시

2.7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회계감사기준」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1. 이 감사기준서는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기준 (이 감사기준서를 포함한 전체 감사기준서를 총칭하여 “감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전반적인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특히 전반적인 목적을 제시하여, 독립된 감사인이 해당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감사의 성격과 범위를 설명한다. 또한,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의 범위, 권위 및 구조를 설명하고, 감사기준의 준수의무 등 모든 감사에 적용되는 독립된 감사인의 일반적 책임을 규정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독립된 감사인은 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5.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로서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것을 요구한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한다.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위험(즉,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부적합한 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켰을 때 이러한 확신을 얻는다. 그러나 합리적인 확인이 절대적인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고유한계가 존재하며 감사인의 결론도출과 의견표명의 기초가 되는 대부분의 감사증거는 결정적 증거이기보다는

설득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13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 감사증거 -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결론에 도달할 때 이용한 정보. 감사증거는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와 기타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감사기준의 목정상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은 다음과 같다.

(ii) 감사증거의 적합성은 감사증거의 질적 척도이다. 즉,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결론을 뒷받침할 때 해당 감사증거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의미한다.

(l) 전문가적 의구심 - 오류나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나태는 것일 수 있는 상황에 유의하면서, 의문을 갖는 마음과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태도

14.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전문가적 의구심)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6. (전문가적 판단)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와 감사위험)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230 감사문서

5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a) 감사보고서의 근거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기록

(b) 감사가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증거

6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감사문서(화) -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입수한 관련 감사증거 및 감사인이 도달한 결론에 관한 기록(“감사조서”라고도 한다)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12 감사인은 감사에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감사와 관련된 통제는 대부분 재무보고와 관계가 있지만, 재무보고와 관계가 있는 통제가 모두 감사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통제가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통제와 결합하여 감사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13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통제를 이해할 때, 해당 기업의 관련자들에 대한 질문 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통제의 설계를 평가하고, 또 통제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42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는 감사인이 잠재적인 왜곡표시의 유형 및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A67 관련 통제의 설계와 실행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위험평가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기업 관련자들에 대한 질문
· 특정 통제적용의 관찰
· 문서 및 보고서의 조사
· 재무보고에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한 거래추적
그러나, 질문만 수행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A70 통제환경을 이해할 때 관련되는 통제환경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f) 권한과 책임의 위임 - 경영활동을 위하여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방법과 보고관계와 승인체계를 설정하는 방법

보론 1

9 일반적으로, 감사와 관련된 통제활동은 다음에 관한 정책과 절차로 분류될 수 있다.
· 업무분장. 거래의 승인, 거래의 기록, 자산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서로 다른 자에게 배정하는 것. 업무분장은 누구든지 일상적인 직무수행 중 오류나 부정을 범하고 동시에 이를 은폐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5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20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의 감사절차를 포함시켜야한다.
(a) 재무제표가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거나 차이를 조정함

500 감사증거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감사증거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하는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2.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의 진행 중에 입수되는 모든 감사증거에 적용한다. 감사의 특정한 측면(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315), 특별한 주제와 관련하여 입수되어야 하는 감사증거(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570), 감사증거를 입증하기 위한 특정절차(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520), 그리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감사기준서 200과 감사기준서 330)는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7.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조사국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320